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, 통합방위예규 적용 근거를 마련하여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 및 인용된 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, 제5조, 제7조, 별표)

○ 상위법령 위임사항과 명칭반영(안 제7조)

○ 내부 사무분장, 직위 반영, 오자 수정 및 체계정비
(안 제2조, 제3조, 제6조, 제7조, 제9조, 제10조)

○ 상위법상 권한 없는 규정 삭제 및 통합방위예규 적용근거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통합방위법」제5조, 제9조,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제8조, 제18조, 제20조,「민방위기본법」제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성별영향평가분석 : 원안동의
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.(2016. 7. 7.~ 2016. 7. 27.)

5. 검토내용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, 민방위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명칭 변경 등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·보완 및 작전상황 발생 시 지역책임 군부대에서 작성한 성주군 통합방위 예규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(협의회 심의사항)에서는 지역주민,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대비책, 통합방위 작전·훈련의 지원 대책,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·운용 및 지원 대책으로 심의사항을 3개항으로 재분류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,

○ 안 제3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)에서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를 명확히 하고, 안 제7조(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)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에 따라 조직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. 또한, 안 제8조(통합방위 작전 등)에서는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 시 지역책임 군부대에서 작성한 성주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별표 성주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선정 기준표에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(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을 반영하여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과 성주군을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등을 추가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적합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방위태세의 확립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